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301

발의연월일: 2023. 2. 27.

발 의 자 : 양정숙 · 김승원 · 김정호

박용진 • 서영교 • 유미향

윤준병 • 이용빈 • 이용선

황운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 안정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사회재난 구호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생계비는 가구 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2022년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자녀가 사망한 유가족의 경우 생활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사망·실종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해당 피해자의 소득의 비중에 상관없이 해당 가구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1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이 속한 가구에 대한 생계비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계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실종자

• 부상자에게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조 등의 지원) ① · ② (생	조 등의 지원) ① · ② (현행
략)	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	3
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	
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	
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	
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	
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	
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	
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1의2.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이 속한 가구에
	대한 생계비 지원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